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2. 9 선고 2021나518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변론 종결2022. 1. 12.

판결 선고2022. 2. 9.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환송전_판결대전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청주)2018나2890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E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62,187,95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62,187,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와 환송전 당심 공동원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환송전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데, 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B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E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이하 '이 사건 각 장비 등'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397,755,379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6,022,916원, B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와 B의 위 각 청구에 대해서 가액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인정하는 것 외에는 전부 인용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와 B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항소로 의제된다),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410,712,2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3,110,719원, B에게 147,601,53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는, 선택적으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고에게 263,110,719원, B에게 147,601,53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263,110,7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3,110,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으며(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B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위 환송전판결에 대하여 B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B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2,187,950원을 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부분과 62,18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환송전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 중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B가 2017.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5. 16. 원고와 B의 각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6. 7.경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2018. 6. 4.자 강제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W)을 확인한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어 2018. 6.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3.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8. 3.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48호로 D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27. 'D는 원고에게 17,578,99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나2320호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D는 원고에게 72,42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1. 9. 8.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421,004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7. 21.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41530호로 D와 F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5. 'D와 F은 연대하여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2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1. 10. 31. 위 1)항 기재 사건 판결에 대하여 D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였고, 2012. 2. 14. 청주지방법원 2011카합218호 사건에서 D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128,897원임을 확정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3. 1. 확정되었다.

나.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의 처분행위

D는 2015.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나머지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G에게 각 2015. 8. 7.자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장재단에 속한 이 사건 각 장비 등의 소유권도 같은 날 위 각 지분별로 피고와 G에게 각 이전되었다(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4조 참조).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장비 등에 관하여는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청주지방법원 2015. 8. 28. 접수 제16124호 2015. 8. 11.자 해지(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또한 H조합은 이 사건 각 장비 등에 관하여도 공동담보목록에 포함하였다.

1항	1,417,654,500	2007. 12. 27. 중소기업진흥공단15억6,000만2008. 7. 24.주식회사 J7억 1,500만2010. 12. 9.J3억6,000만2011. 11. 2.B1억 2,000만2011. 11. 2.L1억	2015. 8. 31.H조합39억2016. 3. 8.주식회사K2억2017. 3. 2.N9천3) 피고 지분에 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이다.
2항	87,021,900	2011. 11. 2.M1억2007. 12. 27.중소기업진흥공단15억6,000만2008. 4. 29.중소기업진흥공단6억4) 별지1 제2항 기재 부동산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이다.2008. 7. 24.주식회사 J7억 1,500만2010. 12. 9.J3억6,000만	2015. 8. 31.H조합39억2016. 3. 8.주식회사K2억2017. 3. 2N9천
3항	752,560,000	없음	2015. 8. 31.H조합39억2017. 3. 2N9천
4항	8,850,000	없음	2015. 8. 31.H조합39억2016. 3. 8.주식회사K2억
5항	8,850,000	2010. 12. 9.J3억6,000만	2015. 8. 31.H조합39억2016. 3. 8.주식회사K2억
6항	99,326,000	2010. 12. 9.J3억6,000만	2015. 8. 31.H조합39억2016. 3. 8.주식회사K2억
7항	938,828,400	없음	2015. 8. 31.H조합39억2016. 3. 8.주식회사K2억2017. 3. 2N9천
8항	115,200,000	없음	2015. 8. 31.H조합39억2016. 3. 8.주식회사K2억2017. 3. 2N9천

1항	1,417,654,500	2007. 12. 27. 중소기업진흥공단 15억 6,000만 2008. 7. 24. 주식회사 J7억 1,500만 2010. 12. 9. J3억 6,000만 2011. 11. 2. B1억 2,000만 2011. 11. 2. L1억	2015. 8. 31. H조합 39억 2016. 3. 8. 주식회사 K2억 2017. 3. 2. N9천3) 피고 지분에 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이다.
9항	847,591,200	없음	2015. 8. 31. H조합 39억 2016. 3. 8. 주식회사 K2억 2017. 3. 2. N9천
합계	4,275,882,000	3,555,000,000원	

라. D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경과

1) D는 2012. 2. 20.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3. 4. 25.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4. 4.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를 인가시점에 면제하고 4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원고의 확정된 채권액 155,469,875원 중 60%인 93,281,295원이 면제되고, 나머지 40%인 62,187,950원이 변제할 채권액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3) 이후 위 법원은 2016. 2. 15. D가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 7~2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2,187,950원(D에 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원고의 채권액 중 변제할 채권액으로 권리변경된 금액이다)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187,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권 소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B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더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D의 책임재산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종료로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뿐더러,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회생절차의 종료로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로서 2013. 6. 24. 이 사건 회생절차는 D의 사위 및 기망에 기초하여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6. 23. 매각주간사 선정의견조회를 송달받았으며, 2016. 1. 25.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송달받았고, 2016. 2. 15.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가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 A은 늦어도 위 2014. 6. 23.이나 2016. 2. 15.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3. 27.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3. 6. 24.과 2014. 6. 2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8. 7. 이전이므로, 위 일시의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송달간주되었고(2018. 7. 9.자 및 2018. 10. 10.자 피고 준비서면에서 표로 정리한 내역),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도 원고에게 송달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 사해행위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8, 9, 12, 14, 18, 24호증, 을 제11~13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주지방법원은 채무자인 D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D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D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으로 변제해야 하였음에도, 회생법원의 허가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8/10 지분을 G이

아닌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그리고 회생법원의 허가 취지와는 달리, G와 피고의 모친인 F 또는 피고가 5:5의 지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활성탄을 제조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하여 소유 명의의 8/10은 피고, 2/10는 G이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회생법원은 2016. 2. 15. 채무자인 D가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을 하였고, 그로 인한 파산절차에서도 청주지방법원은 2017. 5. 2. 채무자인 D가 매각대금의 일부를 은닉하고,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며, 도산절차를 탈법적으로 이용한 의무위반 행위가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또한 그러한 매각대금 변제 거부, 은닉 등으로 D는 업무상배임죄, 피고의 모친인 F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3)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활성탄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피고의 모친인 F과 G, 피고 등은 이 사건 회생절차 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매수하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감액받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4)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한 채무면탈행위 시 채권자가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5) 한편 회생법원이 2015. 1. 26. 허가한 매매계약(갑 제30호증의 8)은 D와 매수인 G이 2015. 1. 7. 매매대금 26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8. 7. 매매대금 42억 7,500만 원, 매수인 G 2/10 지분, 피고 8/10 지분으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갑 제10호증 등 각 등기부등본 참조, 다만 매매대금은 26억 6,000만 원만 지급되었다(을 제6호증)]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매매계약의 이행 및 매매대금의 변제 등이 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은 D의 가장 주요한 책임재산이었다.

(7) D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에 따르면 비영업용 자산인 '서울 강남구

R아파트 S호'(1,000,000,000원), '충남 홍성군 T 전 707m² 및 U 임야 587m² (9,191,000원), '춘천시 V 임야 3,270m² (114,450,000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이 적어도 5,399,523,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4,275,882,000원6) + 1,000,000,000원 + 9,191,000원 + 114,45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7) 같은 시기 D의 소극재산이 4,745,775,674원이고, 시가 4,275,882,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피고 등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26억 6,000만 원만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D는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다(적극재산 위 비영업용 자산의 시가 합계 1,123,641,000원 + 26억 6,000만 원의 합인 3,783,641,000원이 소극재산인 위 4,745,775,674원보다 적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 환송 전 당심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 환송 전 당심증인 G의 나머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0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G이 피고의 모친인 F과 동업계약의 체결이나 사업 수행의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7. 이전에 각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5. 8. 28. 모두 말소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H조합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의 공동담보가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7. 3. 기준 감정가의 합계가 4,275,882,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할 수 있고, 2015. 8. 7.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55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720,882,000원(= 4,275,882,000원 - 3,555,000,000원)이다(이 사건 각 장비 등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만을 공동담보가액으로 보아 판단한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동에 의해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62,187,95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 62,187,95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720,882,000원의 8/10인 576,705,6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62,187,95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62,187,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된 부분은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므로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원익선

판사권노을

판사김지건

별지

- 1) 갑 제12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H조합는 2015. 7. 3.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기준시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7.과 불과 1달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바,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도 같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충북 진천군 ○ 공장용지와 P 공장용지는 2015. 10. 28. 합병되었으므로, 갑 제12호증의 11의 양 토지시가의 합계인 1,417,654,500원(= ○ 감정가 790,120,100원 + P 감정가 627,534,400원)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 3) 피고 지분에 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이다.
- 4) 별지1 제2항 기재 부동산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이다.
-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관련 법리가 충분히 논의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6) 위 제3의 다.항 기재 표 중 시가의 합계란과 같다. 한편 갑 12호증의 11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의 평가총액은 4,297,584,000원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감정서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8번의 충북 진천군 X 과수원 703㎡가 포함되지 않아 그 감정가액인 21,702,000원을 제외한 4,275,882,000원이 된다.
- 7) 이 사건 각 장비 등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